

『베트남 테크페스트(TECHFEST 2026)』 K-스타트업 통합관 참가기업 모집공고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베트남 『TECHFEST 2026』 K-스타트업 통합관 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년 9월 10일
창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해외 전시 지원을 통해 참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 10년 이내)

※ 세부 지원자격 참고 (p.5)

☐ **(모집규모)** 10개사 내외

☐ **(모집기간)** '26. 9. 10.(목) ~ 9. 17.(목) 16:00까지

☐ **(지원 전시회)** 베트남 TECHFEST 2026

- **(전시회명)** TECHFEST
- **(행사일정)** '26.11.13.(금)~11.15.(일) / 베트남(하노이 Hoan Kiem)
- **(주최·주관)**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과학기술상용화개발청(NATEC), 국가창업지원센터(NSSC)
- **(주요분야)** AI, 반도체, 로봇틱스, 에듀테크, 핀테크,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헬스테크, 친환경, 모빌리티 등
- **(프로그램)** 스타트업 전시부스, 온라인 사전 브리핑, 베트남 시장정보 제공, 한-베 스타트업 네트워킹, 스타트업 IR 피칭, 한국대표단 대상 KOREAN DESK 지원(시장 컨설팅, 현지 파트너 발굴 연계 등)
- **(행사규모)** ('25) 참가자 6만명 이상, 전시부스 700개 이상, 투자매칭 100회 이상 등

- **(지원내용)** 기업별 전시부스, 전시마케팅, IR컨설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베트남 바이어·투자자 매칭, 항공·숙박비 최대 150만원 등

2 세부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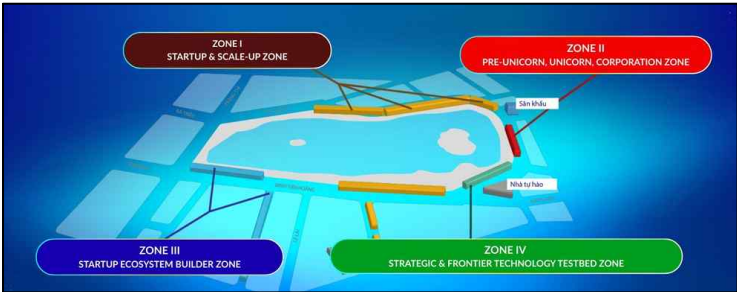
※ 안내문 상 지원내용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TECHFEST 2026 K-Startup관 지원 사항(안) >

구분	지원내용	지원 여부		비고
		여	부	
전시부스 지원	•통합관 내 참가기업별 부스 및 기본 장치	○		-
	•기본 장치 외 기업별 추가 장치(의자·조명 등)		○	-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시 마케팅 교육, 시장이해도 제고 교육 등	○		-
비즈매칭	•참가기업별 해외 투자자·바이어 등 매칭	○		기업별 3건 내외 (일별)
현장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유관기관 답사	○		
홍보	•통합관 및 참가기업 홍보, 디렉토리북 제작	○		-
	•참가기업별 온·오프라인 광고		○	-
물류 운송	•참여기관 및 기업 물류 운송비		○	-
항공·숙박	•참가기업별 출장자 항공·숙박비	○		150만원 한도

- ① **(부스·전시 운영 지원)** TECHFEST 2026 전시장 내 K-스타트업 통합관 구축 및 기업별 부스, 공용 미팅 테이블 등 지원

< 전시 공간 임차 위치 및 디자인 예시 >

	
'25년 전시장 도면	'25년 전시부스 사진

- ②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기업의 전시참가 준비, 베트남 시장 이해, 현지 마케팅 전략 등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제공 (10월 중)

< 역량강화 프로그램(안) >

구분		주요내용
OT	① 오리엔테이션	• 전시회 개요 및 통합관 안내, 전시 내부 프로그램 소개, 기업 기술분야별 부스 기획 설정 후 부스위치 추첨 등
교육	② 전시운영 교육	• 전시회 사전·현장·사후 단계별 마케팅 전략 및 홍보 콘텐츠 활용법 등 전주기적 마케팅 교육 • 부스 디스플레이 전략, 효과적인 제품 시연 기법, 참관객 응대 요령 등 교육
	③ 현지시장 교육	• 베트남 문화, 산업 동향, 현지시장(경제) 특성 및 현황, 투자/계약 관련 법률, 시장 진입 유의사항 등 전문가 강연
	④ IR 피칭 교육 및 1:1 컨설팅	• 해외 투자자 상대 IR 피치덱 작성 방법 및 피칭 요령 등 • 투자자 미팅 수요기업 대상 1:1 IR 피칭 컨설팅을 통해 투자전략, 발표자료 고도화 및 효과적인 투자자 미팅 지원
네트워킹	⑤ 사전 네트워킹	• 참가기업 간 정보 공유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전 네트워킹 지원

- ③ **(비즈니스 매칭)** 참가기업의 산업 분야, 현지 진출 수요 등을 바탕으로 베트남 바이어, 투자자, 협력기관 등과의 비즈니스 미팅 지원

- ④ **(홍보·네트워킹)** 참가기업의 제품·서비스 정보를 수록한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제작 및 현지 투자자·바이어 대상 사전 홍보, 전시회 및 K-스타트업나잇 등 현장 프로그램을 활용한 네트워킹 기회 제공

- ⑤ **(체재비 지원)** 참가기업별 최대 150만원 한도의 항공·숙박료, 여행자 보험(기업 당 1인) 가입 등 지원

< 항공비 지원 유의사항 >

- 항공, 숙박을 포함하여 기업별 한도 금액(150만원)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 전시회 불참, 전시기간 일정 미준수* 등 전시회에 불성실하게 참여시 지원 배제
 - * 부득이한 사유(결항 등) 외 **전시기간('26.11.13 ~ 15, 3일간) 전시에 모두 참여**해야 함
- 항공, 숙박 개별 예약 시 전시회 사후 소요 경비 증빙 필수(항공권, 숙박확인서, 영수증)
- 숙박비는 전시회 참여를 위한 공식 일정 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K-스타트업 통합관 공식 일정은 추후 상세 안내 예정
 - ** (예시) 공식일정이 '26.11.12~15일 때, 해당 기간 전·후 기간 숙박은 지원 불가

- ⑥ **(현장 프로그램)** 참가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IR·네트워킹, 현지 창업 유관기관 네트워킹, 답사 등

< 현장 프로그램(안) >

프로그램	내 용
K-스타트업 나잇	• TECHFEST에 참여할 현지 투자자,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참가기업 IR 피칭 및 사전 네트워킹 지원 (11.12.(금) 예정)
글로벌 협력기관 탐방	• 베트남 창업생태계, 시장 진입 간 지원·유의 사항 등 정보공유를 위한 현장 답사 지원(베트남 소재 글로벌 대기업, KSC하노이 등) • 국내·외 전시 참가기업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킹
현장 간담회	• 전시 참가기업의 교류 및 의견 공유를 위한 전시회 운영기간 중 현장 간담회 운영(11.14.(토) 예정)

⑦ **(현지 교통 지원)** 통합관 단체 공식일정(답사 등)에 한하여 단체 이동을 위한 버스 등 교통편 지원

* 참여기업별 개별 일정에 대한 교통편 지원 불가

⑧ **(성과공유회)** 전시회 종료 후 성과 공유 및 네트워킹 세션을 마련하여 전시회 운영 개선 및 지속 가능한 협업 기반을 구축 (12월 초)

- 기업별 전시성과(상담건수, 투자·유통 협의, MoU 체결 등)와 우수사례 공유, TECHFEST 전시회 시사점 분석 제공
- 참가기업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수렴, 후속 투자·파트너십 연계 가능성 검토, 차년도 통합관 기획 반영을 위한 정책 피드백 수집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안내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10년*) 이내인 자로,

* **[붙임 3]**의 신산업 창업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가능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창업 후 7년 이내) **2019년 9월 11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 후 10년 이내) **2016년 9월 11일** 이후 창업한 기업 ([붙임 3] 분야 해당 시)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최근 5년간* 창업진흥원 해외전시회(미국 CES, 프랑스 VIVATECH, 싱가포르 SWITCH 등) 참가이력이 1회 이하인 기업(2회 이상 기업 제외)

* 2022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⑤ 2022년 이후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글로벌스타트업페스티벌)」에 선정되어 K-스타트업 통합관 참가 이력이 2회 이상 있는 자(기업)
-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⑧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⑩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접수방법 및 평가 절차

□ **접수기간** : '26년 9월 10일(목) ~ 9월 17일(목) 16:00까지

<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되며,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제출서류

※ 서류 미제출, 상이한 양식(타 사업 양식 등)으로 제출 시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서 신청자격 검토를 위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불응 시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비고
필수	• 사업계획서	[별첨1] 양식 참조
	• 해외전시회 참가 서약서	[별첨2] 양식 참조
	• 영문 IR 자료	자율양식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및 동의서, (해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서류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제출 안내 예정

□ 지원규모 : 총 10개사 선정

□ 평가절차

①모집 및 접수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 선정
K-STARTUP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및 제출자료 검토	영어 발표평가	최종 요건검토 및 선정결과 발표
9.10.(목) ~ 9.17.(목)	~9.22.(화)	9.29.(화) 예정	~ 10.6.(화)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 평가는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하며, 필요시 전시회별 참여 적합성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내용)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기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접수 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이하의 경우 서류평가 생략 가능
- *** 평가단계별 평가점수 만점(100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처리

○ **(서류평가)** 참가신청 기업별 제출한 사업계획서, 글로벌 진출 준비 자료(피칭덱, 영문 홈페이지 등) 바탕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필요시 추가 자료(내용)를 요청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영어 발표평가(대면평가)를 진행하여 글로벌 진출 준비 정도,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참가 포기 기업 발생 시 발표평가 예정일 3일 전까지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 평가지표(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평가 자료	
		필수 검토자료	참고자료
글로벌진출 준비 정도	• 현지 시장 진출 및 글로벌 성장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 현지 관계자 대상으로 원활한 소통 및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여부와 완성도 • 글로벌 관계자들 대상 원활한 소통 능력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아이템 특성 등)	①홈페이지 ②아이템 홍보 콘텐츠 등
창업 아이템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	•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및 독창성 • 기술 실현 가능성 및 완성도 • 목표시장 수익 발생 가능성 및 파급력 • 혁신 제품(서비스) 사업화·성장 가능성 • 제품(서비스) 실현을 위한 대표자, 기업(팀원) 보유 역량		
참여 전시회 적합성	• 전시회 특성과 아이템(서비스)과의 적합도		

* 동점자 발생 시 '글로벌 성장 가능성' → '진출 준비정도' → 전시회 적합성' 항목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센터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본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선정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 발생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참가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있음

- 동일 해외전시회에 본 사업 외 타 사업 또는 기관의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시 본 사업의 지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수 혹은 제재 가능
- 선정기업은 선정 통보일부터 5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 외 참가포기·전시회 불참 시 기 투입된 예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전시회 시작일('26. 11.13.) 20일 이전('26.10.24.)까지 참가 포기 시 소요된 예산의 환수를 진행하지 않으나, 그 이후 포기 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및 환수 심의 가능

- 발표평가(영어 인터뷰)는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참여 가능함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가입된 자에 한함

- 선정기업은 해외전시회 프로그램에 전담으로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해외전시회 참가자가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 현지 법규 준수,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사후 성과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6

문의처

☐ 시스템 문의 : 국번 없이 1357

☐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글로벌협력실

- 044 -410-1713, 1711 / gek@kised.or.kr

별첨1
2026년 베트남 TECHFEST 참가기업 사업계획서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베트남 TECHFEST 2026 참가 신청 사업계획서**

※ 본 페이지(1page) 포함 총 6page 내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 양식·표는 변경·삭제 불가(표 행 추가 가능, 해당 없을 시 공란 유지)하나 사진(이미지)·표 추가 가능

※ 본문 작성 시,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일반현황**

창업아이템명		00기술이 적용된 00기능의 (혜택을 제공하는) 00제품·서비스 등					
수혜사업명		지원연도 + 사업명 (예시) 2023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업명		00000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 : 개업연월일, 법인 : 회사성립연월일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공동·각자대표(개인·법인)		사업장 소재지 (본사·점)		00도 00시·군	
사업자등록번호				베트남 법인 또는 지사 설립 여부		여 ☐	
법인등록번호		해당 시				부 ☐	
주요성과 (백만원/명)	고용 (대표자 제외) *연말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24년	00명	수출 (해당년도 누적액)	'24년	00백만원	
		'25년	00명		'25년	00백만원	
		신청일 현재	00명		신청일 현재	00백만원	
	매출 (해당년도 누적액)	'24년	00백만원	투자 (신청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24년	00백만원	
		'25년	00백만원		'25년	00백만원	
		신청일 현재	00백만원		신청일 현재	00백만원	
신청기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기업 구성 현황 (대표자 본인 제외 공동·각자대표 포함)							
연번	직위	담당 업무		보유역량(경력 및 학력 등)		구성 상태	
1	공동대표	S/W 개발 총괄		00학 박사, 00학과 교수 재직(00년)		완료	
2	대리	해외 영업		00학 학사, 00 관련 경력(00년 이상)		예정('00.0)	
...							

□ [본문] 창업아이템 개요

① 소 개	※ 본 지원사업을 통해 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 <u>개요</u>(사용 용도, 사양, 가격 등), <u>핵심 기능·성능</u>, <u>고객 제공 혜택</u> 등 ※ 예시 : 가벼움(고객 제공 혜택)을 위해서 용량을 줄이는 재료(핵심 기능)를 사용
② 참여 목적 ※ 중복 선택 가능	☐ 투자유치 ☐ 파트너 발굴 ☐ 해외 시장 진출 ☐ 홍보 ☐ 기타() * 상세목적 : 상세 참여 목적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③ 창업 아이템의 성장 전략	※ 진출하려는 목표시장의 <u>규모·상황</u>, <u>경쟁 강도</u>, <u>향후 전망(성장성)</u>, <u>고객 특성</u>, <u>제약 조건(규제사항)</u> 및 <u>제품/기술의 시장 출시 여부</u> 등
③-1 비즈니스 모델	※ 창업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 중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 등
③-2 창업아이템 개발 방안, 진행 정도	※ 제품(서비스) 구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및 소요기간, 추진일정 등 사업 전체 로드맵 및 추진 일정 등
③-3 경쟁력 확보 방안	※ 경쟁제품·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제품·서비스가 가진 차별·독창성 또는 창업팀이 가진 보유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하기 위한 방안 등
④ 글로벌 진출 전략	※ 진출하려는 목표시장의 <u>규모·상황</u>, <u>경쟁 강도</u>, <u>향후 전망(성장성)</u>, <u>고객 특성</u>, <u>제약 조건(규제사항)</u> 및 <u>제품/기술의 시장 출시 여부</u> 등
④-1 본 해외전시회를 통한 글로벌 진출 계획	※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및 기술경쟁력을 통한 성장계획 중 본 베트남 TECHFEST 참가를 통한 성장 계획 등
④-2 글로벌 진출 주요 성과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현재 해외 고객 확보, 매출, 수익, 투자, 해외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 진출 준비단계 등

⑤ 팀 보유 역량	※ 창업 아이템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이력, 역량, 사업 성장을 위한 현재 팀원 보유 역량 등
⑤-1 글로벌 진출 보유 역량	※ 글로벌 담당 전문인력, 소통능력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팀원의 보유 역량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참가 서약서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베트남 TECHFEST 2026』에 참가기업으로 다음 사항에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베트남 TECHFEST 2026』에 참여함에 있어 전담기관 창업진흥원의 사업 안내사항을 준수하고, 전시회 및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다.
2. 당사는 전시회에 참여함에 있어 전시회가 개최되는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고, 국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3. 당사는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참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4. 당사는 당사의 전시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을 진행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5. 당사는 동일 전시회 참가와 관련하여 타 기관 또는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향후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등 관련 조치에 성실히 따를 것을 서약한다.
6. 당사는 해외전시회 사업성과 분석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성과조사에 성실히 참여하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설문 및 전화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7.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회 불참, 일정 미준수 등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전담기관의 조치에 성실히 따른다. 또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창 업 기 업 명 :

대 표 자 :

(직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참 고

2026년 베트남 테크페스트(TECHFEST) 개요

- ☐ (국가 및 일정) 베트남(하노이), '26. 11. 13.(금) ~ 15.(일)
- ☐ (주최·주관)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과학기술상용화개발청(NATEC), 국가창업지원센터(NSSC)
 - * 베트남 정부의 「국가 창업전략」에 따라 혁신창업을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기술·혁신·디지털 전환 기반의 창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
- ☐ (행사 개요)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대표 혁신창업 행사로, 국내외 스타트업과 현지 대기업·투자기관·정부 및 창업지원기관 등 참여
 - * 2025년 주요 참가기업 : Viettel·VNPT·MobiFone(통신·디지털 인프라), FPT(IT·디지털 전환), Vingroup·Masan Group(대기업집단·소비재·유통), Vietjet Air·Vietnam Airlines(항공), Samsung Vietnam·Bosch Vietnam(전자·첨단제조), Grab Vietnam(모빌리티·플랫폼) 등
- ☐ (주요분야) AI, 반도체, 로봇틱스, 에듀테크, 핀테크,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헬스테크, 친환경, 모빌리티 등
- ☐ (전시규모) ('25) 참관객 6만여명, 전시부스 700개 이상, B2B 매칭 200건 이상 및 벤처투자 거래 1억 3,500만 달러 기록
- ☐ 주요 프로그램('25. 기준)
 - (혁신제품 전시) 베트남 및 해외 스타트업의 기술·제품·서비스 전시와 현장 시연을 통해 제품 홍보 및 현지 시장검증 기회 제공
 - (B2B·투자자 매칭) 참가기업의 기술·사업 분야와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베트남 기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유통사 및 사업 파트너와의 사전·현장 상담 지원
 - (정책포럼·세미나) 벤처투자 활성화와 공공·민간 벤처펀드 조성, 스마트시티 및 녹색·디지털 전환 등 정책 논의와 국제협력 방안 모색
 - (신기술 쇼케이스·테스트베드) AI, IoT, AR·VR, 애그리테크, 스마트시티 등 혁신기술을 직접 체험·시연하고 현지 수요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제품의 시장 적합성 확인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창 업 ★ * '26.9.1. 이전 창업은 부칙 적용 여부 확인
		폐업 1년 초과 폐업 1년 까지 성실경영실패자	창업아님 창 업
법인기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창 업 ★ * '26.9.1. 이전 창업은 부칙 적용 여부 확인
		폐업 1년 초과 폐업 1년 까지 성실경영실패자	창업아님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창 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9.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No.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신산업 창업 분야

☐ 신산업 창업 분야

* 관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 신산업 27대 분야 >	⑩ 자율주행차	⑳ 신재생에너지
① 인공지능	⑪ 전기수소차	㉑ 이차전지
② 빅데이터	⑫ 바이오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③ 5G+	⑬ 의료기기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④ 블록체인	⑭ 기능성 식품	㉔ 우주
⑤ 서비스플랫폼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㉕ 차세대 원전
⑥ 실감형콘텐츠	⑯ 미래형 선박	㉖ 양자
⑦ 지능형 로봇	⑰ 재난/안전	㉗ 사이버 보안
⑧ 스마트 제조	⑱ 스마트시티	
⑨ 시스템반도체	㉙ 스마트홈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창업진흥원 누리집) <https://www.kised.or.kr>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우편신고)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집현동) 창업진흥원